

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결격사항

□ 자격요건

구 분		요 건
직 무 수 행 요 건	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한민국 국민인 자 ■ 「경비업법」 제5조(임원의 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■ 「한국마사회법」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마주가 아닌 자
	학력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특별한 학력제한 없음 ■ 경마를 포함한 레저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자 ■ 그 밖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필요역량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원으로서의 리더쉽과 비전 제시 능력 ■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■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■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■ 경영혁신의지, 대외교섭력, 대국민 봉사정신과 관련한 소양과 덕목

□ 결격사항

<공통사항>

○ 「경비업법」 제5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
4. 이 법 또는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이 법(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)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<사외이사만 해당>

○ 「상법」 제382조 제3항 (이사의 선임,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